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391

발의연월일: 2022. 7. 11.

발 의 자: 문진석 · 김병기 · 김병욱

서영석 · 양향자 · 윤영덕

유재갑 • 이용빈 • 이형석

조오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)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이르게 한 경우,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굴착기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,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굴착기, 불도저,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).

법률 제 호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11제1항 중 "원동기장치자전거를"을 "원동기장치자전거, 건설기계를"로 한다.

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원동기장치자전거를"을 "원동기장치자전거, 건설기계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 -----<u>원동기장</u> 를 포함한다)를 운전하여 사람 치자전거, 건설기계를-----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 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--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자 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----원동기장치자전거, 건설 한다)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 기계를-----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

한다. 이하 같다)에게 「교통사	
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1항의	
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	
다.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